

연금상담전문가(CPE) 교재 1권 개정표 (교재 발행일: 2023.03.01)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1	상10	부담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다.	부담금은 기업이 부담한다.	문장 수정
1	12	하9	연금의 적립금은 증가하므로		삭제
1	24	하8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2 층)과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2 층)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문장 수정
1	30	상1	기업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한다. NEST 기준 부담률은 사용자 3%, 근로자 4% 그리고 국가 1%(조세 감면)로서 총 임금의 8% 수준이다. DB 형 기업연금의 평균부담률은 2015 년 현재 사용자 16.2%, 근로자 5%로서 총 21.2%에 달하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직전 최종소득 기준 54%, 평균소득기준으로는 31%에 달한다(2011 년 영국 연금정책연구소). 국가연금제도가 통합되기 전에는 소득비례 국가 2 층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NEST 도입이 강제화되면서 기업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NEST 는 부담금(contribution) 산정 방식이 사전에 결정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이다.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NEST 보다 높다면 DB 형, DC 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납입 시 비과세, 인출 시 과세하는 적격개인연금이 3 층 연금을 구성한다.	기업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인 NEST 의 부담률은 총임금의 8%로서 사용자가 3%, 근로자가 4% 그리고 국가가 1%(조세 감면) 분담한다. 또한 납입 시 비과세, 인출 시 과세하는 적격개인연금이 3 층 연금을 구성한다	문장 수정
1	30	그림 1-2	2 층 자동등록 (NEST, 기업연금 등)	2 층 자동가입 (NEST, 기업연금 등)	문장 수정
1	30	그림 1-2	하단 민간근로자	민간근로자(공무원 포함)	문장 수정
1	32	상3	DC 형이 75% , DB 형이 25% 로 DC 형 퇴직연금제도가 전체의 3/4 을 차지하고 있다. DC 형 연금제도 중에서도 401(k) 제도의 적립금 비중은 52.7% (DC 의 70%)에 달한다.	DC 형이 76% , DB 형이 24% 로 DC 형 퇴직연금제도가 전체의 3/4 을 차지하고 있다. DC 형 연금제도 중에서도 401(k) 제도의 적립금 비중은 53.5% (DC 의 70%)에 달한다.	업데이트

1	32	표 1-2		첨부 1 로 대체	업데이트
1	32	하3	일반 IRA 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에서는 72 세부터 기대연령에 따라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인출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새문단으로 401(k)와 IRA 등 퇴직연금계좌에서는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소득세와 별도로 인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조기 인출과징금이 부과된다(예외 인출사유 제외). Roth IRA는 계좌 개설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도 조기인출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73세부터는 가입자의 기대연령에 따라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인출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의 은퇴 소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위해 SECURE ACT 2.0(SECURE 2.0 Act of 2022)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최소인출금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가 72세에서 73로 연기되었고 최소인출금액 미만으로 인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50%가 25% 이하로 하향되었다. 또한 예외적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인출한 금액을 3년 이내에 다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장 수정
1	34	상2	복지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복지 차원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용어 수정
1	34	상6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산정된다.	기대여명 기간의 연금현가계수(annuity factor)로 나누어 산정된다.	내용 수정
1	34	상11	본인 연령의 기대여명으로	본인 연령의 기대여명 기간의 연금현가계수로	내용 수정

1	51	하1	2021 년 말 65 세 이상 노령인구 884 만 5,000 명 중 67.2%인 593 만	2022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 925만 116명 중 67.4%인 623만	업데이트
1	52	상1	3,000 명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 하지 않아서 노인가구의 2.7%인 23 만 8,000 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798 명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노인가구의 2.6%인 23 만 6,283 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데이트
1	52	하4	<그림 2-2>는 ~ 약 19 만 명이다.	문단 전체 삭제	문단 삭제
1	53	그림 2-2	그림 2-2	그림 2-2 삭제	그림 삭제
1	54	상10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최소 연계가입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된다	문장 수정
1	54	하1		새 문단 추가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주요 수혜자는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다. 또한 지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직하거나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는 사람들도 공적연금연계제도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문단 추가
1	55	상10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은 60 세 이후 65 세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고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지역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개시 연령보다 연계법에 따른 수급개시 연령이 낮은 경우 연계퇴직연금도 연계법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반대로 연계법에 따른 수급개시 연령이 지역연금법에 따른 수급개시 연령보다 빠르더라도 연계퇴직연금은 지역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개시 연령부터 받을 수 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 이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문장 추가
1	55~56	55 하3 ~ 56 하1	(3) 연계연금 수령 시기 ~ (4) 연계연금의 수령	첨부 2로 대체	업데이트

첨부 1

<표 1-2> 미국의 일반 기업의 기업연금 규모(2023. 9말)

구분	DB	DC			합계
	민간	401(k)	기타	합계	
금액(십억달러)	3,075	6,935	2,955	9,890	12,965
비중(%)	23.7%	53.5%	22.8%	76.2%	

출처: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20

첨부 2

(3) 연계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최소 연계기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계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직역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더 높은 경우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규정한 연금개시수급 연령부터 연계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계연금 신청을 위한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계속가입기간,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제외한 가입기간이고 직역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재직기간과 같다. 국민연금 추후보험료 납부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중복 가입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연계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간에는 포함된다. 임의계속가입기간,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액과 같다.

<표 2-2> 연계연금 수령액

연금 유형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계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 x (가입연수/20년)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x (가입연수/10년)
연계퇴직연금액	퇴직(퇴역)연금액	직역연금법 상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연금액 x 60%	

* 연금 수급권은 가입기간(재직기간)이 10년(군인연금은 20년) 이상인 경우 발생

(4) 연계연금의 수령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수령하는 연계연금으로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계노령연금과 연계유족연금, 직역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다. 연계연금액은 가입(재직)기간별로 해당 연금제도에서 정한 연금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단, 연계가입기간을 충족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연금대신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계연금액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급여가 조정된다. 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중복되는 경우 조정하지 않고 모두 수령한다.

[공적연금연계 꿀팁 10]

1. 공적연금연계 신청한 경우 반납금은 연계신청 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납부한다(납부고지서 발송됨)
2.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할 경우 퇴직일시금은 반환하지만, 퇴직수당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60세 이후 가입기간)은 연계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계노령연금액은 임의계속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은 연계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5. 직역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연계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연계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7.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가입자는 60세 전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회복한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8. 공적연금연계 신청 후 연계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수급개시연령 전에 사망하면 연계연금 신청은 없던 것으로 한다.
9. 연계노령연금이나 연계퇴직연금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의 대상이 된다.
10. 연계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타 급여를 중복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중복조정 방법, 연계퇴직(퇴역)연금과 직역연금의 급여를 중복수령할 때에는 직역연금의 중복조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초연금 정오표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57	상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삭제
1	57	하4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가 월 202만 원, 부부가구가 월 323.2만 원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가 월 213만 원, 부부가구가 월 340만 8천 원	업데이트
1	57	하1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	업데이트
1	58	전체	해당 페이지 전체	첨부 1로 대체	업데이트
1	59	상2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 받을 수 있다.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소득 인정액이 65세 이상 노인 기준 소득 하위 70%인 가구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외국국적 배우자와 난민인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퇴역)연금(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포함), 장애(상이)연금(별정우체국 장애연금 제외)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아래에 열거한 '기초연금 예외 수급권자'와 연	내용 수정

				금수령을 위한 최소재직기간에 미달한 직역연금가입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59	박스	직역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군인연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순직/직무상유족연금 대신 수령한 경우) 또는 장해일시금(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비공무상/비직무상 포함)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사람	문장 수정
1	59	하3	기초연금 수급자가 ~ 미수령분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실종·부재선고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은 제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사람, 가출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및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은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승인은 되었지만, 이를 수령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여 미수령분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처음 수령할 때 개설한	업데이트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1	61	상6	소득 유형별 월소득 산정 방법은 ~과 같다.	소득평가액은 개인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소득 유형별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은 과 같다.	문장 수정
1	61	표2-3 상1	•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수령하는 근로소득-108만 원)의 70%	•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수령하는 근로소득-기본공제액)의 70%	업데이트
1	61	표2-3 상2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별로 산정하고 개인별 산정금액이 0 미만일 경우 0으로 함. 108만 원은 2023년 기준금액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조정됨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별로 산정하고 개인별 산정금액이 0 미만일 경우 0으로 함. 기본공제액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2024년 110만 원)	문장 수정
1	61	표2-3 상6	근로 중 장애로 인한 요양 산재급여는 포함하지만,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는 제외	삭제	삭제
1	61	표2-3 하2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또는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재산에 포함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개시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금융재산에 포함, 잔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문장 수정
1	62	표2-3 상4	공적이전소득 전체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 급여(연계연금 포함)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이 아닌 재산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는 제외) -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급여(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또는 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명예수당 등은 제외)	문장 수정
1	62	첫 사례	[사례] 퇴직 근로자의 소득 산정방법	사례를 삭제하고 첨부 2 추가	삭제 및 추가
1	62	두번째 사례	[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Q 2024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적용될 본인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국민연금의 노령 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여부	문장 수정

				판단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얼마인가? A. 부부의 근로소득은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은 2024년 기본공제액 110만 원보다 낮으므로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0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 = $0.7 \times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따라서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동일한 93만 원이다.	
1	63	상5 박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times 4\% \div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times 4\% \div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음수이면 0으로 함	주석 추가
1	63	상11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조합입주권,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조합입주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추가
1	63	상14	주택,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을 말한다.	주택,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거목적의 임차금은 95% 해당액)을 말한다.	추가
1	63	하7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 ~ 임차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포함된다.	문단 전체 삭제 후, 첨부 3 박스로 대체	수정
1	63	하13	②금융재산 전체	첨부 4로 대체	문장 수정
1	65	상2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이다.	기타(증여)재산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이다. 자녀뿐 아니라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도 기타(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임대했던 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시가표준액의 50% 이내)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한다.	문장 추가
1	65	상8	자연소비금액(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단독가구 월 221.7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 원)	자연적 소비금액(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35만 7,329 원, 부부가구 월 286만	업데이트

				4,957 원)	
1	65	하7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10년 이상 차량은 제외) 및 회원권은 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고급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기차는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고급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이륜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급자동차는 제외된다. 회원권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요트·종합체육시설(휘트니스 등)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장 수정 및 추가
1	67	하5 박스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문장 수정
1	68	상4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초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초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장 수정
1	68	상6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공적연금 등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 공적이전소득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상회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평가액이 140만 원이고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65만 원인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5만 원인데, 이 사람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 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노령연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 노령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상회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월 2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노령연금을 제외한 소득평가액이 220만 원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소득평가액이 240만 원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 213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문장 수정
1	68	상10	둘째,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 감액되어 지급된다.	문장 수정
1	68	하13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란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과 중복하여 수령하는 분할연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분할연금,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수령하는 연계노령(퇴직)연금을 포함하지만,	문장 수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평가액에는 포함된다.	
1	68	박스 상1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2023년 기준 48만 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괄호 삭제
1	69	하7	•국민연금급여액 등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값이 음수이면 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250%-국민연금 급여액등 (최소금액=0, 최대금액=기준연금액)	수정
1	69	하5	•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 + 부가연금액, []안의 값이 음수이면 0	•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국민연금 A급여액] + 부가연금액([]안의 값이 음수이면 0, 최대금액=기준연금액)	수정
1	70	상2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연계퇴직연금 × 50%)]+ 부가연금액, []안의 값이 음수이면 0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연계퇴직연금 × 50%)]+ 부가연금액([]안의 값이 음수이면 0, 최대금액=기준연금액)	문장 수정
1	70	상4	국민연금급여액 적용 산식의 값은 ~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 5로 대체	수정
1	70	하6	국민연금의 A값은 개인이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수령하는 시점(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말한다. A값은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수령할 때 확정된다. B값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기준소득 월액이다. A값과 B값 그리고 노령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연금편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A값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B값은 신청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다. 기본연금액은 A값과 연동되는 A급여액과 B값과 연동되는 소득비례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은퇴 전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본연금액 중 A급여액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A값과 B값 그리고 노령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제3절 국민연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문장 수정
1	70	하1	70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71페이지 <표 2-5> 전 문단까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 <표 2-5>와 같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만을 포함한다(<표 2-5>의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에 0로 표시). 하지만 <표 2-5>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보듯이 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연기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된 경우에도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에는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연기	문장 수정

				기간 종료 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실제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A급여액은 감액 전 또는 연기 전 연금액인 수급개시 연령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1	71	표2-5 상4	(노령연금-미청구)의 A급여액 칸 예상연금액	수급개시 연령의 예상연금액	문장 수정
1	71	하6		새 문단 추가(표 2-5 아래) 노령연금, 분할연금 및 연계노령연금(직역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 한정)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산정한다. 이 경우 중복조정에 따라 노령연금과 함께 (연계)유족연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연계)유족연금액은 A급여액에서는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등에는 포함된다.	문단 추가
1	71	하6	(2) 기초연금 감액 전체	(2) 기초연금 감액 ①부부감액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 부부 각각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는 것을 말한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연계감액이 차감된 금 액(직역연금 특례수급자는 부가연금액)으로서 부부별로 산정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소득역전방지감액 부부감액을 차감한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부부는 합산 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상회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가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을	문장 수정

				기초연금으로 수령하면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소득이 210만 원을 초과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11만 원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인 가구와 211만 원인 가구의 소득이 역전되는데, 이는 국가보조금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소득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	72	상8	기준연금액의 10%(2023년 기준 3만 2,318원)	기준연금액의 10%(2024년 기준 3만 3,481원)	업데이트
1	72	하5	부부가구(2023년 기준)는 최소한 기준연금액 (323,180원)의 20%인 64,636원(1인당 32,318원)을	부부가구(2024년 기준)는 최소한 기준연금액 (334,810원)의 20%인 66,962원(1인당 33,481원)을	업데이트
1	73	사례 질문	박희남(66세)씨는 2022년... 2023년의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이다. 박희남씨의 2022년...	박희남(66세)씨는 2023년... 2024년의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은 210만 원,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이다. 박희남씨의 2023년...	업데이트
1	73	사례 답변	박희남씨의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준연금액의 185.7%로 국민연금감액 대상이지만, 장애인연금 법에 의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이므로 국민연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희남씨의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동일한 32만 3,180원이다.	박희남씨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준연금액의 179.2%로 국민연금감액 대상이지만, 장애인연금 법에 의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이므로 국민연금연계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희남씨의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동일한 33만 4,810원이다.	업데이트
1	73	사례 답변	박희남씨는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적용된다. 박희남 씨의 소득인정액 185만 원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박희남씨는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적용된다. 박희남 씨의 소득인정액 185만 원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218만 4,810원)이 선정기준액(21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문장 수정
1	73	사례 답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202-185 = 17만 원 기준연금액의 10%(3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210-185 = 25만 원이 기준연금액의 10%(3만	업데이트

			3,180원)보다 크므로 기초연금액 17만 원과 기초연금액 32만 3,180원 중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박희남씨의 기초연금액은 17만 원이다.	3,481원)보다 크므로 박희남 씨는 25만 원과 기초연금액 33만 4,810원 중 적은 금액인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한다. 또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산정한 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1,850,000+334,810)- 2,100,000=84,810. 따라서 기초연금액=334,810-84,810=250,000 원	
1	74	상1	국민연금급여액 등이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문장 수정
1	74	상2	국민연금급여액 등이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문장 수정
1	74	상3	임의가입하였고 국민연금급여액 등이 35만 원이다	임의가입하여 35만 원(A급여액 25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문장 수정
1	74	상3	강국민씨 부부가구 의 소득인정액은 290만 원이다. 기준연금액이 32만 3,180원이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 부부가구 기준 323.2만 원일 때	강국민씨 부부가구 의 소득인정액은 300만 원(국민연금 급여액등 포함)이다. 기준연금액이 33만 4,810원이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일 때	업데이트
1	74	상6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300만 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40만 8천 원)보다	문장 수정
1	74	상8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감 액 후 금액을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부합산 기초연금액을	문장 수정
1	74	상11	강국민씨의 기초연금액: 20만 4,770원	• 강국민씨의 기초연금액: 20만 4,770원	문장 앞에 점(•) 추가
1	74	상14	A급여액 적용 산식: $\text{Max}[0, (323,180 - (2/3) \times 420,000)] + 323,180 \times 50\% = 20\text{만 } 4,770\text{원}$	A급여액 적용 산식: $\text{Max}[0, (334,810 - (2/3) \times 420,000)] + 334,810 \times 50\% = 22\text{만 } 2,215\text{원}$	업데이트
1	74	상16	배우자의 기초연금액: 32만 3,180원	배우자의 기초연금액: 33만 4,810원	문장 앞 점(•) 추가
1	74	하8	강국민씨의 부부감액 = $204,770 \times 20\% = 4\text{만 } 954\text{원}$ 배우자의 부부감액 = $323,180 \times 20\% = 6\text{만 } 4,636\text{원}$	강국민씨의 부부감액 = $222,215 \times 20\% = 44,443\text{원}$ 배우자의 부부감액 = $334,810 \times 20\% = 66,962\text{원}$	업데이트
1	74	하6	$= (204,770 - 40,954) + (323,180 - 64,636) = 42\text{만 } 2,360\text{원}$	$= (222,215 - 44,443) + (334,810 - 66,962) = 445,620\text{원}$	업데이트
1	74	하4	소득인정액은 290만 원인데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을	소득인정액은 300만 원인데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44만	수정

				5,620원)을	
1	74	하2	강국민씨 부부의(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23.2 - 290 = 33.2만 원,	강국민씨 부부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408,000-3,000,000=408,000 원. 이 금액은 부부감액 후 부부의 기초연금액(44만 5,620원)에서 소득역전방지감액(3,000,000+445,620-3,408,000=37,620원)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	업데이트
1	74	하1	기초연금액의 20%인 6만 4,636원보다 크므로 부부의 기초연금액은 33만 2,000원이 된다	기초연금액의 20%((부부가구 최저연금액)인 6만 6,962원보다 크므로 강국민씨 부부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은 총 40만 8천 원이다.	업데이트
1	75	상2	33만 2천 원을	40만 8천 원을	
1	75	하2	강국민씨의 기초연금 급여액: $332,000 \times 204,770 \div (204,770 + 323,180) = 12\text{만 } 8,769\text{원}$	강국민씨의 기초연금 급여액: $408,000 \times 222,215 \div (222,215 + 334,810) = 16\text{만 } 2,764\text{원}$	업데이트
1	75	하1	배우자의 기초연금 급여액: $332,000 \times 323,180 \div (204,770 + 323,180) = 20\text{만 } 3,231\text{원}$	배우자의 기초연금 급여액: $408,000 \times 334,810 \div (222,215 + 334,810) = 24\text{만 } 5,236\text{원}$	업데이트
1	75	하1		첨부 6 추가	추가

첨부 1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모든 국민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 2022년 말 65세 이상 노령인구 925만 명의 67.4%인 647만 5천 명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신청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2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때가 되면 본인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초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므로 최소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신청일 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액은 소급하여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사실(이)혼 관계인 경우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정한다. 사실(이)혼을 확인해 줄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 이웃주민, 지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2인(부득이한 경우 1인)이 확인해 주면 가능하다.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하여 확인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전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파악하여 매년 재선정된다. 따라서 올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었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기초연금 대상자를 재선정할 때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추정치로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자치센터 직원도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결과로 상담을 해주므로 해당 사이트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때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웹사이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노후준비 사이트 「내연금」(<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첨부 2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수령액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4년 1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임대소득은 국세청에서 임대소득 정보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는 42.6%, 점포임대는 41.5%의 단순경비율(2022. 3. 30. 고시기준)로 필요경비가 공제된다.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사회보험 소득자료, 국세청 소득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가 공제된다. 단순경비율은 매년 3월 30일에 국세청이 고시한다.

첨부 3

[자동차 분류]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승합·이륜 자동차
-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 고급자동차가 아닌 승용·승합·이륜 자동차, 화물·특수 자동차 및 덤프트럭, 1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압류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고급자동차
-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비과세자동차(2대 이상인 경우 수급희망자가 지정한 1대만 제외)
- 유의: 자녀와 공동소유 자동차는 전체 차량가액이, 리스자동차는 보증금만 일반재산에 합산

첨부 4

②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예금, 유가증권, 연금저축 및 보험상품 등으로서 평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융재산 평가방법]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계좌당 10만 원 이상만 조회)
-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잔액 또는 총 납입액(계좌당 10만 원 이상만 조회)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평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 : 최종 잔액(일시금 수령액 포함)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연금저축(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개시 후 잔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재산소득에 포함된다. 단,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보험상품은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의 재산에 포함한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급자가 자녀인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모의 재산에 포함된다. 수익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의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된다. 다만 계약자가 제3자인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첨부 5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A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시나리오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구분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기초연금 산정액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OR	기준연금액의 75% 이하	기준연금액
감액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AND	기준연금액의 75% 초과 ~ 150% 미만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AND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A급여액 적용 산식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	AND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수령여부는 매년 재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A급여액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수령하는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A값이 기여한 부분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사용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금액을 사용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 6

[기초연금 관련 꿀팁 20]

-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하다.
 -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재산은 시가평가액(잔액)으로 평가
 - 부동산(일반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이 금융재산 공제액(2천만 원)보다 높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효과가 없다.
- 비과세통장 명의를 자녀에게 빌려주면 비과세통장 잔액이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소득이 소득에 포함된다.
-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액 전액이 일반재산이나 고급자동차에 포함된다.
- 개인 간 부채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은 부부간, 자녀 또는 지인의 동의가 있으면 부부가구 또는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거나 추후납부 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다.
- 60일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 고급승용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는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 연금저축의 잔액은 연금 수령 전에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연금수령을 개시한 후에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연금 수급을 개시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재산소득에 포함되고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일시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 주택연금은 월수령에 누적금액이 부채로 인정된다.
- 부동산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에 포함된다.
-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주거목적의 경우 95% 해당액)은 일반재산에 포함된다.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 1년 미만 건설종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 자녀가 주는 생활비는 소득에 인정되지 않지만, 목돈으로 모으면 금융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이내에서 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대 11,000원이 감면된다.
- 보험상품은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제3절 국민연금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76	하1	직역연금에서 탈퇴한 후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역연금에서 탈퇴한 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장 수정
1	77	상6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않는 법인의 이어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 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 원, 2023년 기준)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않는 법인의 이사,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된다.	문장 수정
1	77	박스	[사업장가입자 대상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박스 전체	1개월 이상, 월 8일(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사람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는 대학강사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월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024년 기준 220만 원)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수정
1	77	하3	지역가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탈퇴할 수 없다.	지역가입 대상자는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소득을 신고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탈퇴할 수 없다.	문장 수정
1	78	박스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박스 전체	첨부 국 1로 대체	문장 수정

1	78	하1	전업주부, 학생 등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나이가 60 세 미만인 다음 사람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첨부 국 2 의 박스 추가	문장 수정
1	79	상1	단, 직역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지급이 정지중인 사람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 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또는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다	단, 직역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소득이 있어서 지급 정지 중인 사람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 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또는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다.	수정
1	79	상11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한 후 임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2023 년 기준 단독가구 32 만 3,180 원, 부부가구 51 만 7,080 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부(129)와 상담한 후 임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령연금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 수정
1	79	하9	65 세에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문장 수정
1	80	상5	<그림 2-5> 에서 보듯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도 되지만, 노후에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9% 를 납입하면서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 수정
1	80	하4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 가성비는 높아진다.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로 시작하는 문단 전체와 그림 2-5 삭제	삭제
1	81	하1		첨부 국 3 박스 추가	추가
1	82	상4	연금보험료를 부담한다.	연금보험료를 부담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기여금이라고 한다.	문장 추가
1	82	상10	사용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된다.	사용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된다(최고 5% 연체금 가산)	문장 추가
1	83	상8	나중에 추후납부 신청을 통하여 최대 119 개월을 한도로	삭제 후 새 문단 추가	문장 추가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문장 삭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 세 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납부예외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결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 분의 1 을 초과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	83	하10	국민연금 가입자는 10 년 미만(119 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는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0 년 미만(119 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다.	문장 수정
1	83	하7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18 세 미만 근로자 포함)	문장 추가
1	83	하3	추후납부 시 연금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므로 적용제외자인 경우 임의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추후납부 시 연금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문장 수정
1	85	상5	(2023 년 기준 260 만 원)	(2024년 기준 270만 원)	업데이트
1	85	상8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문장 수정
1	85	하10		1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문장 추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지원수준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동일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한 가사근로자에 한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10명 미만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	85	하4	(2023년 103만 원)	(2024년 103만 원)	업데이트
1	86	상3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1천 원 미만 절사)	문장 수정
1	86	박스 상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한 후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한 사람은 포함하지만,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한 사람은 제외)	문장 수정
1	86	박스 상4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문장 수정
1	87	박스 상3	(2023년 기준 100만 원)	(2024년 기준 100만 원)	업데이트
1	87	하8	국민연금공단의 통지 및 결정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의 통지 및 결정	문장 수정
1	88	상6	2023년 7월부터 1년 간 적용되는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37만 원과 59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6.7% 증가하였다	2024년 7월부터 1년 간 적용되는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39만 원과 617만 원으로 2023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1	88	하3	하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2023년 기준 100만 원)이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이보다 높게 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A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금액인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4년 기준 100만 원). 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2024년 기준 37만 원)이다. 임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이내에서 하한액 이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장 수정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년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다.	
1	89	상2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한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이내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증액시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첫 문단 끝에 문장 추가
1	90	상2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pension benefits)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와 이혼한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 그리고 연금개시 연 령 전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pension benefits)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구성된다. 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에 지급되지만, 동 연령 전에 최대 5년 이내에서 조기에 수령하거나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다.	문장 수정
1	90	상6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급여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에 지급되고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가족 또는 친지에게 지급된다.	문장 수정
1	91~92	P91 상1~ P92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p.92 기본연금액(월수령액) 박스까지	첨부 p.91~92	내용 수정
1	92	하13	기본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서 본인의 소득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합하여 2로 나눈 평균이다. 기본연금 월수령액 산식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은 월평균소득의 1%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20년을 가입한 사람은 본인의 평균소득의 20%,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은 평균소득의 40%를 기본연금액으로 수령한다.	노령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서 본인의 소득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합하여 2로 나눈 평균이다. 노령연금 월수령액 산식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노령연금액은 평균소득의 1%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20년을 가입한 사람은 본인의 평균소득의 20%,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은 평균소득의 40%를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문장 수정

1	93	상8	2022년의 A값은 286만 원	2023년의 A값은 298만 9,237원	업데이트
1	93	상9	직전연도 12월 31일	직전연도 말	문장 수정
1	93	상11	2023년에	2024년에	문장 수정
1	93	표 2-8	표 2-8 전체	첨부 국6으로 대체	업데이트
1	94	상1	200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8년까지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2023년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가입자의 B값을 계산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B값은 555.5만 원이다.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20년 12월까지 10년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2024년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가입자의 B값을 계산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B값은 582만 원이다.	업데이트
1	94	표2-9	표 2-9 전체	첨부 국7로 대체	업데이트
1	95	상1, 상3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	문장 수정
1	95	상4	평균임금상승률	평균소득증가율	문장 수정
1	95	상9	군복무크레딧제도	~비례상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신청을 통하여 가입기간(직역연금 가입기간은 제외)을 늘릴 수 있다. 추납신청을 하더라도 군복무크레딧은 중복하여 인정된다.	문단 추가
1	96	하7	기본소득액을	기본연금액을	문장 수정
1	96	하4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면 반납한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데, 해당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은 <표2-10>의 기간별 모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삭제
1	97	상1	1998년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기간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그리고 소득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998년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간별 소득대체율(비례상수)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을 계산한다.	문장 수정
1	97	표 2-11 제목	기본연금 연간 수령액 계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연수령액 계산	문장 수정
1	97	표 2-11 하1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문장 수정

1	98	표 2-12	<표 2-12>	첨부 국8으로 대체	업데이트
1	98	하5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된다.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된다. 2024년의 소득월액이 A값(2024년 298만 9,237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감액된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가 월 400만 1,828원(연 4,802만 1,941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된다.	문장 수정 및 추가
1	99	하9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6%씩(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되어 지급된다.	1개월마다 기본연금액의 0.5%(1년 기준 6%)씩 감액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수급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수령하면 노령연금액의 30%가 감액된다.	문장 수정
1	100	하8	2021년 현재 1960년생인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인 62세 미만까지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수급개시연령 직후 5년 동안(62세부터 67세 미만)까지는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과 동일한 산식에 따라 감액(최대 50% 감액)되어 노령연금액을 수령한다.	2024년 1월 현재 1961년생인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인 63세 미만까지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수급개시연령직후 5년 동안(63세부터 68세 미만)까지는 노령연금감액과 동일한 산식에 따라 감액(최대 50%)되어 노령연금액을 수령한다.	문장 수정
1	100~101	하 3	⑦ 분할연금 전체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첨부 국9 추가	업데이트
1	101	박스 상1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문장 수정
1	101	하3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연금 등	문장 수정
1	101	하1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수령한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수령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노령연금은 소멸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의 유족이	문장 수정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유족연금은 분할연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	102	박스	[유족의 순위]	첨부 국10으로 대체	업데이트
1	102	하10~하2	월평균소득이 A값을 ~ 출생한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월평균소득(사업(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액)이 A값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지만, 수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인 경우,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포함)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1970년 생, 54세)가 2024년 1월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한다면, 3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의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하지만, 2027년 1월부터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A값을 초과하는 월평균소득을 받는다면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 5년 전인 60세(2030년)부터는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다시 수령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인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과 동일하다.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로서 가입자가 생존했더라면 수령할 노령연금액과 같아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령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액	문장 수정

				은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유족인 자녀 등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시점에 자녀가 없어서 차순위권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자녀가 출생하면 새로 출생한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1	103	박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제외)	문장 수정
1	103	상1~5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삭제	문단 삭제
1	104	표 하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20년으로 가정하여 기본연금액 산정		삭제
1	104	상15	이때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문장 수정
1	105	상10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하여 연복리로 계산한다.	문장 수정
1	105	상12	이자와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연복리로 계산)와	문장 수정
1	105	상15	수급권이 발생한 후	수급권이 발생한(수급개시 연령) 후	문장 수정
1	106	상2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문장 수정
1	106	상5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 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 한다.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문장 수정

			방계혈족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생계를 지원받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106	하7	국민연금에서 2개 이상의 연금 급여를 수령하게 된 경우 그중 하나만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이라면 선택하지 않은 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수령한다.	중복급여의 조정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2개 이상의 연금 급여를 수령하게 된 경우 그중 하나만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이라면 선택하지 않은 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수령한다.	내용 추가
1	107	상1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반환일시금만 수령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반환일시금만 수령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문장 수정
1	107	하4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	문장 수정
1	107	상8	③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 중복 위	첨부 국11 추가	박스 추가
1	107	하1		첨부 국12 추가	사례 추가
1	107	하1		첨부 국13 추가	꿀팁 추가

첨부 국1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퇴직(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단,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 중인 사람)
 -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않는 법인의 이사
 -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77쪽 참조)
 - 18세 미만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하여 사업장 가입을 탈퇴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이 원하여 사업장 가입을 탈퇴한 사람
 - 18세~27세 미만 학생 또는 군복무자 등 소득이 없으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한함)
 - 사망한 사람
- ※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가입 상태 유지

첨부 국2

[임의가입 신청 대상]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한 사람 제외)
-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첨부 국3

[사회보장협정]

- ① 사회보장협정 당사국의 국가연금 가입자에게 상호주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맺은 협정
- 보험료 면제/이종가입 배제: 단기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또는 협정대상국의 국가연금 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협정대상국 연금 기관에 가입기간 정보 요청)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상 연금액을 산정하고 합산 가입기간 대비 국가별 가입기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 지급(예: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 미만이라도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국 모두에서 최소 18개월 가입한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연금 수령 가능)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나, 가입기간 합산 협정상대국 국민에게는 귀국 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되면 반환일시금 지급

- 동등 대우: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동등한 대우 제공
- 협정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

② 외국에서 가입한 국가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 방법

- 외국에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연금과의 합산가입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외국 국가연금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외국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63-713-7101)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외국기관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 제공

※ 국가별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에서 확인 가능

p.91~92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노령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0.05×가입연수+부양가족연금액

④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수급 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5세)에 수령하는 연금액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의 비례상수, 평균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text{기본연금액(연수령액)} = \text{비례상수} \times (A+B) \times (1+0.05 \times n \div 12)$$

n: 20년 초과 가입월수

비례상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상응하는 상수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은 생애평균소득(B값)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국민연금법은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비례상수는 1.2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B값은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A값 증가율)을 사용하여 수급개시 연령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위 산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와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 1999년 이후 가입 가정]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20년 미만	비례상수 x (A+B)
20년 이하	비례상수 x (A+B) x (1+0.05 x 20년 초과연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노령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령연금 연수령액을 구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노령연금 연수령액} &= \text{비례상수} \times (A+B) \times (0.05 \times N) + \text{부양가족연금액} \\ &= \text{기본연금액} \times (0.05 \times N) + \text{부양가족연금액} \end{aligned}$$

N: 국민연금 총가입연수

위 산식에 따르면, 가입기간인 10년인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기본연금액의 50%이다.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가입기간이 20년인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은 비례상수 x (A+B)와 같다.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1.2를 대입하고 연수령액을 12로 나누어 수급개시 연령에 수령하는 노령연금 월수령액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text{노령연금 월수령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1\% \times \left(\frac{A+B}{2} \right) \times N$$

첨부 국4

③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 생애 누적 기준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받는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소득금액(2024년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p.91 박스 첨부

[노령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 x 0.05 x 가입연수+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 1999년 이후 가입 가정]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20년 미만	비례상수 x (A+B)
20년 이하	비례상수 x (A+B) x (1+0.05 x 20년 초과연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노령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령연금 연수령액을 구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노령연금 연수령액=비례상수 x (A+B) x (0.05 x N)+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x (0.05 x N)+부양가족연금액

N은 국민연금 총가입연수이다. 위 산식에 따르면, 가입기간인 10년인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기본연금액의 50%이다.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가입기간이 20년인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은 비례상수 x (A+B)와 같다.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1.2를 대입하고 연수령액을 12로 나누어 수급개시 연령에 수령하는 노령연금 월수령액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노령연금 월수령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1% x $\left(\frac{A+B}{2}\right) \times N$

첨부 국6

<표 2-8> A값 계산 방법

연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만원) (a)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누적상승률(b)	연금수급직전 물가수준금액(만원) (c=a x b)
2023	302	111.6	1	302
2022	287	107.7	1.036	297.3
2021	273	102.5	1.089	297.3
2024년에 적용되는 A 값(3년 평균)				298.9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을 총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

첨부 국7

<표 2-9> B값 계산 방법(예시)

연도	A 값(만원)	재평가율(a)	기준소득월액 (만원)(b)	'23 말 물가기준 기준소득월액 (만원)(a × b)
2011	189	1.580	367	580
2012	194	1.544	379	585
2013	198	1.508	391	590
2014	204	1.462	403	589
2015	211	1.420	416	591
2016	218	1.373	429	589
2017	227	1.317	442	582
2018	236	1.268	456	578
2019	244	1.226	465	570
2020	254	1.177	480	565
2021	268	1.115		
2022	286	1.045		
2023	299	1.000		
2024 년에 적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B 값)				582(평균)

첨부 국8

<표 2-12>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연수령액

지급 대상	부양가족 요건		연금액(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없음		293,580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5,660/인
부모	60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3급 수준

첨부 국9

⑦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한 사람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의 50%(법원의 재판 또는 당사자 간 합의(공증 필수)에 의해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비율)를 수령하는 연금이다.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혼하였던 배우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분할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분할연금이 발생한 이후의 노령연금액이 지급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하였던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여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을 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수령한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

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혼하였던 배우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 되지 않는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5년 이상 혼인기간 중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
-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개시 연령 도달(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과 동일)

분할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에 지급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중복 수령하게 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선택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수령한다. 분할연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수령한다. 분할연금과 장애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게 된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게 된 경우 분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수령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수령한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의 중복조정은 노령연금의 중복조정방법과 동일하다.

첨부 국10

[유족의 순위]

순위	유족	유족 요건	
1	배우자(사실혼 포함)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부모	60세 이상	
4	손자녀 (손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19세 미만	
5	조부모(조부모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60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3급 수준

첨부 국11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중복 급여		수령 급여
노령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	모두 수령
	장애연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액 중 선택
	반환일시금	노령(분할)연금+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본인의 반환일시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가족의 반환일시금	장애연금+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유족연금	유족연금	선택한 유족연금+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첨부 국12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 시 유족연금 지급정지 기간 산출 방법]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상실된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최대 60개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됨 -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상실과 관련이 없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나 치료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을 제외한 일실이익(소극적 손해)만 포함 - 일실이익(逸失利益): 교통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이익 또는 소득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일실이익=가입자의 일실이익×가해자의 과실비율×유족연금 수급권자 상속지분-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은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국민연금 A값임 - 유족연금 정지 개월 수(월 미만 절사)=(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지급사유 발생 당시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비지출액)
--

첨부 국13

국민연금 꿀팁 20 -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고급자동차 등 재산 규모와 무관하다. -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입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이 걱정된다면 9년 정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59세 때 10년을 채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자등록을 낸 1인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본인과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다. -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면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 수령한 반환일시금은 60세 이후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60세 전에 1

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로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함께 반납한다.

9.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수급개시 연령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0. 1988년 이후 군복무를 마친 사람(직역연금 가입자 제외)은 군복무 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보험료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크레딧 6개월도 중복하여 인정된다.
11. 60세 전에 은퇴하면 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를 선납한 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
12.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가급적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금보험료 금액 선택 가능).
13.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하여 수령하는 반환일시금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정기에금 3년 만기 금리로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14.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반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액을 계산한다.
15.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 추후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액을 계산한다.
16.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월 400만 1,828원(2024년 기준)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근로소득금액이 A값 이하)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지 않는다.
17.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0세 전에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가입기간이 증가하여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증가한다.
18.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모두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부터 수령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19.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때 받는 유족연금액이나 장애연금액은 본인의 실제 노령연금 수령액이 아닌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중복급여 조정 방법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중복급여 조정 방법과 동일하다.

제4절 공무원연금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12	하8	(2023 년 539 만 원	(2023.5 월 2024. 4 월까지 적용 금액 544 만 원)	업데이트
1	123	상1	(4) 분할연금 전체	(4) 분할연금 첨부로 대체	업데이트
1	123	하2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장애등급 제 1 급부터 제 14 급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장애연금액을 수령한다.	공무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수령한다.	문장 수정
1	124	상2	지급비율은~(6) 퇴직급여 까지	p.124~126 첨부로 대체	문장 수정
1	129	상3	(1) 퇴직연금의 감액 (하단에 추가)	① 연금외 소득 발생 시 감액	소제목 추가
1	129	하8	2022 년 평균연금월액은 250 만	2023 년 평균연금월액은 264 만	업데이트
1	129	하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과실로~ 상단	② 징계·파면 등으로 인한 감액	소제목 추가
1	130	하9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의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액이 지급정지된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및 장애연금(비공무상 장애연금 포함)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액이 지급정지된다.	문장 수정
1	130	하7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지방의회의원은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본인의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이면 해당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 정지	문장 추가
1	131	하1		새 문단 추가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은 지급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받는 연금액의 4 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년	문단 추가

				6 월 해외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망, 결혼, 이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중지될 수도 있다.	
1	132	표 2-31 하4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가입기간 1 년당)	문장 수정
1	132	하1		첨부 직 4 추가	꿀팁 추가

첨부 (4)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조기)퇴직연금액의 50%(재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공증 필수)에 의해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비율)를 수급개시 연령(2033년 이후 65세)부터 지급하는 연금이다. 2016년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모두 충족]

1.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
3.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로 생존 중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과 동일)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지급한다.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된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고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3년 이내에 해당 일시금의 분할을 청구하면 해당 일시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이 정지된 경우에는 배우자였던 사람과 동일하게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과 (조기)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원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된 후의 금액을 지급한다.

첨부 p.124~126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산정의 기준인 월평균소득액이다. 공무상 장애로 인해 수령하는 장해연금의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은 장해등급 제1급의 경우 52%이고 장애등급이 한 등급씩 낮아질 때 마다 3.25% 포인트씩 감소하여 제14급의 지급비율은 9.75%로 하락한다. 공무상 장애로 인하여 수령하는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5년치의 장해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수령한다.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은 장해등급 1~2급은 26%, 3~4급은 22.75%, 5~7급은 19.5%이다. 비공 무상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수령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해연금액의 60%를 수령한다. 장해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한다. 단, 지급정지 전의 장해급여가 더 크면 지급정지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장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이 지급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해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지만, 제3자가 해당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인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6) 유족급여

공무원의 유족급여는 재해유족급여와 퇴직유족급여로 구분된다.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유족의 범위]	
관계	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퇴직 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제외(퇴직 당시 태아는 포함)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와 같고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된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 재혼(사실혼 포함), 친족관계의 종료,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비장애인)가 되었을 때 또는 해당 유족연금 수급자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급이 종료된다.

①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해연금액의 60%를 장해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나. 순직유족연금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 시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유족 1인당 사망 시 기준소득월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순직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단, 유족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 시 기준소득월액의 20% 이내로 한다. 또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위험한 직무에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은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 시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우는 60%)에 유족 1인당 사망 시 기준소득 월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단, 유족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 시 기준소득월액의 20%로 한다. 또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작전 중의 사망 60배)의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표 2-26〉 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종류	연금 수령액
순직유족연금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 (38% + Min[유족수 × 5%, 20%])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 (43% + Min[유족수 × 5%, 20%])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

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산식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와 160%를 각각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적용받는다.

②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한다. 퇴직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유족은 퇴직유족연금과 별도로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또는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유족급여 종류별 수령요건과 수령금액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퇴직유족급여 종류별 수령요건 및 수령금액

종류	수령요건	수령금액
퇴직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재직 중 사망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 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지급	퇴직연금일시금의 25%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연금 수령 전 사망하거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수령 개시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 × 25% × (36개월 - 퇴직연금수급월수) ÷ 36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여 퇴직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원할 때	퇴직연금일시금 산식과 동일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 시	퇴직일시금 산식과 동일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수령한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연금부가금 대신 퇴직유족

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 개시 3년 이후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 지급이 종결된다. 연금 개시 3년 이내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직계 존·비속(19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등)에게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하여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된다.

$3\text{년 기준 미지급연금액} = 3\text{년치 (조기)퇴직연금액} \times [36\text{개월} - (\text{조기)퇴직연금 기수령 월수}] \div 36$
--

첨부 직4

[공무원연금 꿀팁 10]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액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2. 퇴직유족연금액은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연계퇴직연금액의 60%이다.
3. (조기)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족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본인의 (조기)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50%만 지급된다.
4. 퇴직한 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5.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6.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및 부모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민법 상 상속순위 적용)
7. 분할연금은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부터 수령한다.
8. 분할연금은 이혼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9.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 포함)을 합한 금액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조기)퇴직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된다.
10.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연금개시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3년 연금총액-기수령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제5절 군인연금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40	상7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수급권자가 복무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50%를 수 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연금이다. 혼인기간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추가
1	140	상7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의 장해연금은 분할 대상 연금이 아니지만 군인의 상이연금은 분할 대상 연금이다. 분할연금은 이를 처음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부터 5 년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첨부 군1 추가 후 새 문단으로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50%(재판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된 경우 그 분할비율)이다.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의 장해연금은 분할 대상 연금이 아니지만, 군인의 상이연금은 분할 대상 연금이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일시금)은 이를 처음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분할연금 수급 요건 충족 시점)부터 5 년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박스 추가 및 새 문단 추가
1	140	하8		새 문단으로 추가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이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분할연금도 감액되거나 정지된다.	문단 추가
1	142	하2	(6) 퇴역유족연금	(6) 퇴직유족급여	
1	142	하1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퇴역연금(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문장 수정

			유족에게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60%를 퇴역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역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퇴역유족연금액(상이연금액)은 퇴역연금액(상이연금액)의 60%이다.	
1	143	상1	임용된 군인의	임관된 군인의	문장 수정
1	143	상6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으로서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첨부 군 2 추가	소제목 및 박스 추가
1	143	상6		새 문단 추가 퇴역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와 같고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인 이상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된다.	문단 추가
1	144	하6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수령한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수령한다. 새 문단 추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군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2024년 5월부터 시행된다.	문단 추가
1	145	상7	퇴직수당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지급비율	퇴직수당=기준소득월액×복무기간×지급비율	문장 수정
1	146	상3	(1) 퇴직급여의 감액 하단	④ 연금외 소득으로 인한 감액	제목 추가
1	146	상4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고시, 2022년 기준 4,445,889 원)을	문장 수정

1	146	하9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제외) 상단	② 징계·파면 등에 따른 감액	제목 추가
1	147	상4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유	용어 수정
1	148	상7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 정지	문장 추가
1	147	하10	본인의 퇴역연금, 조기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액은 50%만 수령한다.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한다.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상이유족연금액)은 50%만 수령한다.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한다. 퇴역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연금 모두 전액 수령한다.	
1	148	하1		첨부 군 3 추가	꿀팁 추가
1	160	하1		첨부 사 1 추가	꿀팁추가

첨부 직1

[분할연금 수급 요건: 모두 충족]	
1.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제외)이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2020. 6. 11. 이후)	
3.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하고 있음	

첨부 군2

[유족의 범위]	
관계	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 복무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 퇴역연금 수급자가 61세된 이후 혼인한 배우자 제외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장애등급 1~7급)인 장애인 • 61세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제외(60세 당시 태아는 포함)
손자녀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장애등급 1~7급)이고 퇴역연금수급자가 실제 부양하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부모	• 친부모 또는 퇴역일 전에 입양된 부모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퇴역일 전에 입양된 조부모

첨부 군3

[군인연금 꿀팁 10]	
1. 군인연금은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현역병 군복무기간 포함)인 경우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계급 정년 등으로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합산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연계퇴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퇴역연금은 퇴역직 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4. 군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60세 전에 임의가입은 가능), 퇴직일시금을 수급하거나,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5. 퇴역유족연금액(상이유족연금액)은 퇴역연금액(상이연금액)의 60%를 수령하지만, 25세 미만 자녀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유족은 70%를 수령한다. 6. 군인이 퇴역 후 수령하는 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연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절감된다. 7.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외 소득(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합산)이 전년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사업소득금액에는 임대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8.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되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로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30%만,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수령하게 되면 (퇴역연금액+유족연금액의 50%)를 수령한다. 9. 군인연금의 유족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는 25세로서 타 직역연금의 19세보다 높다.	

10. 퇴역연금 수급자가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첨부 사1

[사학연금등 꿀팁 10]

1. 사학연금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2. 사학연금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금액의 상한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의 160%이지만(공무원과 동일), 별정우체국연금은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의 1605%가 적용된다.
3.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되어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퇴직할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더라도, 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5. 퇴직연금 수급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이 아니면 퇴직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6. 직역연금의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7.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8.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1기간 구분 시점만 상이).
9. 별정우체국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별정우체국연금의 비업무상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산정기준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제7절 공적연금과 세금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61	하5	개인부담금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문장 수정
1	161	하1	시행되었다.	시행되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등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문장 추가
1	161	하1		새 문단 추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거나 선납하는 경우에도 납입 시점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50 세 이후 퇴사 후 더 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5 년 이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이 있을 때 할인된 보험료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문단 추가
1	162	상10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서 수령하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장해)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직역연금에서 퇴직연금 대신 수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수당과 함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 중 비과세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다. 직역연금의 퇴직(퇴역)연금 대신 수령하는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직(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첨부 공 1 추가	박스 추가
1	164	상3	원천징수세율은 과세대 상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세대상소득에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1	164	상3	연말에 소득세가 정산된다.	연말에 소득세가 정산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동	문장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 신고서 상 공제대상 가족 수를 적용하거나 1 인만 적용한다.	
1	164	하10	770 만 원 이하	770 만 원 이하(연금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시 산출세액=0)	문장 수정
1	165	상5	연 500 만 원	연 500 만 원(원천징수 없음)	
1	165	하8	1,200 만 원을 초과하는	1,500 만 원을 초과하는	업데이트
1	165	하1	표 2-47 하단	표 2-48 추가	표 추가
1	166	상7	납입한 보험료	납입한 연금보험료	문장 수정
1	166	사례 상3	1,300 만 원	1,300 만 원(전액 연금보험료 공제 받았음)	문장 수정
1	167	하10	=2002. 1 월~ 2018. 12 월까지의 총개월수 = 204 개월	=2002. 1 월~ 2022. 12 월까지의 총개월수 = 252 개월	오류 수정
1	167	하9	1998 년 1 월 ~ 2018. 12 월까지의 총개월수 = 252 개월	1998 년 1 월 ~ 2022. 12 월까지의 총개월수 = 288 개월	오류 수정
1	167	하8	6,000 만 원 × 204 개월 ÷ 252 개월 = 4,857 만 원	6,000 만 원 × 252 개월 ÷ 288 개월 = 5,250 만 원	오류 수정
1	167	하5	확인되는 금액이다.	확인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 중 과세대상 소득은 2002 년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같다. 김군인씨의 사례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에 소득공제 확인된 금액이 1 천 만 원인 경우 김군인씨가 납입한 기여금 4,000 만 원 중 과세제외기여금등은 3,000 만 원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5,250 만 원에서 3,000 만 원을 차감한 2,250 만 원이 된다. 공적연금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1 년 미만은 1 년으로 봄).	문장 수정
1	168	하1		첨부 공 3 추가	꿀팁 추가

첨부 공1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포함), 장애연금
2.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포함),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첨부 공3

[공적연금과 세금 꿀팁 5]

1. 공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 및 일시금 중 2001 년 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2. 2002 년 이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제외된다.
3.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200 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연금저축계좌에 600 만 원까지 납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설 후 5 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5.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때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6. 분할연금액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과세대상 금액=[분할연금액×혼인기간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재직시 혼인기간 중 기여금 총납부월수]이다.
7. 공적연금에서 수령하는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급여계좌로 받는 대신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55 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면 60%)만 납부한다.
8. 공적연금 수급자가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로 이주할 경우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해외 거주국에서는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자가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한국에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미국은 과세하지 않는다.
9. 조세협약에서 공적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조세협약 상 직역연금 중 사학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은 공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직역연금은 모두 공적연금으로 분류되어 퇴직(퇴역)연금(분할연금 포함)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제3장 사적연금제도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70	하4	2021 년 말 296 조원에	2022 년 말 336 조원에	업데이트
1	170	하3	연 30.3% 증가율로 가장 높았고 DC 형 퇴직연금이 연 16.9%로	연 30.4% 증가율로 가장 높았고 DC 형 퇴직연금이 연 15.2%로	업데이트
1	170	하2	연 11.5% 증가하면서	연 11.6% 증가하면서	업데이트
1	170	하12	2016 년 말 68.0%에서 2021 년 말 58.1%로 감소하였다.	2017 년 말 65.8%에서 2022 년 말 60.2%로 감소하였다.	업데이트
1	171	표3-1		첨부 퇴 1 로 대체	업데이트
1	171	상9	2020 년 말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 근로자의 52.4%인 622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 년 말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 근로자의 53.2%인 653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업데이트
1	171	상12	90.8%에 달하지만, 10~29 인 사업장은 56.5%, 5~9 인 사업장은 32.9%에	92.9%에 달하지만, 10~29 인 사업장은 57.3%, 5~9 인 사업장은 30%에	업데이트
1	174	상8	2023 년	2024 년	업데이트
1	175	상11	한다. 그러나 이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한다. 적립금 수준이 최소적립금의 95%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을 3 분의 1 이상을 1 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200~1,0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장 수정
1	179	상10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 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022 년 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13 개 은행, 15 개 증권 사, 19 개 보험사 및 근로복지공단 등 총 48 개의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43 개로서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다.	문단 전체 삭제	문단 삭제

1	185	상9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2.5% 한도)	부상으로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문장 수정
1	185	하1	~퇴직금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새 문단으로 ~퇴직금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첨부 퇴2 추가	문단 추가 박스 추가
1	187	그림 3-2	재정안정화 계획서	최소적립금 미달 시 조치 사항	문장 수정
1	187	그림 3-2	- 적립금의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자에게 제출(미작성 시 과태료 500 만 원) - 최대 3 년 이내 적립금 부족 해소	- 최소적립금 미달 시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자에게 제출(위반 시 과태료 500 만 원) -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 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 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위반 시 사용자는 1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문장 수정
1	188	상8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퇴직연금제도 관련 부서장 및 퇴직연금 외부 전문가를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장 추가
1	188	하3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55 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거나 퇴직급여총액이 300 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첨부 퇴3 추가	첨부로 대체
1	189	하2	인출 시 세제가 상이하므로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일시금으로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문장 수정
1	191	상3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액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사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유와 동일하다.	문장 추가
1	191	상9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 년 11 월부터 타 금융기관 간 퇴직연금계좌를 이전할 때	문장 추가

				현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1	193	하4	230 만 원	242 만 원	업데이트
1	193	하2	23 만 원	24 만 2 천 원	업데이트
1	195	상13	원리금보장상품 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그리고 이율보증보험 등은 금융기관 당 5,000 만 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퇴직연금계좌(DC, IRP 합산 기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및 이율보증보험 등)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5 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문장 수정
1	196	상7	40% 이하인 펀드로 한정된다.	50% 이하로 하여 모든 채권혼합형펀드가 해당된다.	문장 수정
1	196	하3	이전된다.	이전된다(24 년 11 월부터 현물 이전 허용 예정).	문장 수정
1	197	하9	하지만,	55 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IRP 계좌에서는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수 있다.	문장 수정
1	197	하1	대출은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대출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문장 수정
1	198	하5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제한된다	해당하는 일시금만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문장 수정
1	201	사례 상2	2022 년 5 월에	2024 년 1 월에	문장 수정
1	202	상9	2012 년 이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이체된 금액과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한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확정되고 퇴직소득세가 산정된다.	문장 삭제	문장 삭제
1	202	상12	의무화되었다. 2013 년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확정되어 퇴직소득세가	의무화되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문장 수정
1	203	상4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세=퇴직소득 산출세액	문장 수정
1	203	하6	만 55 세가 되는 날	55 세가 되는 날	문장 수정
1	204	상2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DC 계좌, IRP 계좌 등이다.	삭제	문장 삭제

1	205	상2	10 년을 초과하여	실제 수령 연차가 10 년을 초과하여	문장 수정
1	205	사례 상3	2021 년과 2025	2025	업데이트
1	205	사례 상5	2021 년의 연금의 실제 수령 연차는 5 년차, 2025 년에는 9 년차이다	2024 년의 연금의 실제 수령 연차는 8 년차이다.	업데이트
1	205	사례 하2	2021 년에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면 2021 년	2021 년부터 매년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2023 년	업데이트
1	205	사례 하1	2021 년 연금의 실제 수령 연차는 2 년차이다.	2024 년 연금의 실제 수령 연차는 5 년차이다.	업데이트
1	206	하1	최대화할 수 있다.	최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 세에 은퇴했지만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절벽기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부담금을 연금으로 인출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연퇴직소득 인출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문장 추가
1	207	사례 상2	2021 년 12 월	2023 년 12 월	업데이트
1	207	사례 상4	2022 년	2024 년	업데이트
1	207	사례 상6	연금은 2022 년 1 월 5 일부터 연금인출한도까지 인출한다고 할 경우 2022 년의	2023 년에 연금을 인출하지 않았고 2024 년 1 월 5 일에 처음으로 연금인출 한도까지 인출한다고 할 경우 2024 년의	업데이트
1	207	사례 상8	연금 개시일: 2021 년 12 월 1 일 2022 년에 수령하는 연금의 과세기간 개시일: 2022 년 1 월 1 일 2022 년 연금수령 연차: 2 년차 2022 년 연금수령 한도	연금 개시일: 2023 년 12 월 1 일(IR 계좌로 이전된 퇴직소득은 55 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024 년에 수령하는 연금의 과세기간 개시일: 2024 년 1 월 1 일 2024 년 연금수령 연차: 2 년차 2024 년 연금수령 한도	업데이트
1	207	상12	2022 년	2024 년	업데이트
1	207	상15	2022 년에	2024 년에	업데이트
1	208	하12	6 개월 미만이었지만, 3 개월 이상이어서	3 개월 이상이어서	문장 수정
1	208	하8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충족하여야 한다.	초과해야 해당 의료비를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문장 수정

1	208	하7	중도 인출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소득세법에 따라	문장 수정
1	208	하3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여 퇴직소득세 절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법에 의 한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 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삭제	문장 삭제
1	208	하1	예외적으로 55 세 이후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55 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 계좌를 55 세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문장 수정
1	209	하1		첨부 퇴 4 추가	꿀팁 추가

첨부 퇴1

<표 3-1>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적립금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증가율
확정급여형(DB)	110.9	121.2	138.0	153.9	171.5	192.4	11.6%
확정기여형(DC)	42.3	49.7	57.8	67.2	77.6	85.9	15.2%
개인형 IRP	15.3	19.2	25.4	34.4	46.5	57.6	30.4%
합계	168.5	190.1	221.2	255.5	295.6	335.9	14.8%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 퇴2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사유]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계좌로 의무 이전)

첨부 퇴3

[퇴직연금(DB 및 DC형)을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사유]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상환 후 남은 잔액은 IRP계좌로 의무 이전)
- 퇴직연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계좌로 의무 이전)

첨부 퇴4

[퇴직연금 꿀팁 20]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 퇴직소득이 이체된 연금계좌(개인부담금이 있더라도)에서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3. 55세 이후 퇴직하여 연금계좌에 이체한 후 즉시 전액 인출하더라도(연금수령 신청 후) 퇴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한다.
4.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은 DC형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IRP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5. 공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므로 연금계좌로 이전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6. 퇴직연금계좌에서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지정하더라도 돈(부담금)을 입금하면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60일까지 현금성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단, 2회차 이후부터 납입되는 금액은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납입된 직후 사전지정운용상품에 가입된다.
7. 중도인출은 DB형제도에서는 금지되지만, 퇴직금제도(중간정산) 및 DC형제도에서는 가능하다.
8.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9. DC형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는 사용자(기업)이 부담하지만, DC계좌에 입금된 개인부담금과 IRP계좌의 관리수수료는 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한다.
10. DC형 퇴직연금계좌와 IRP계좌의 적립금은 본인(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투자)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연금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211	하6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 총액은 2021 년 말 160.1 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 연금저축신탁계좌는 2018 년부터 원금보장상품의 출시가 금지되면서 은행이 신규 판매를 중단하였다. 2021 년 중 연금저축계좌의 신규 계약은 175 만 건으로 전년 신규 계약 대비 194% 증가하였 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신규 계약이 163 만 건 증가하여 전체의 93.4% 수준에 달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신규 계약은 11 만 건으로 전년비 8.3% 감소했다. 저금리로 인하여 연금저축보험 의 인기는 하락한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 총액은 2022 년 말 160.8 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원금보장상품의 신규판매가 중지된 연금저축신탁계좌의 적립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적립금은 소폭 감소하였다. 총 적립금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계좌의 적립금은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계약건수 기준으로는 연금저축신탁계좌와 연금저축보험계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증가하고 있다. 연금저축 유형별 수탁고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내용 수정
1	212	표 3-8		첨부 개 1 로 대체	업데이트
1	212	상9 (표3-8 하단)	IRP 계좌의 적립금 총액은 2016 년 말 8 조 6,000 억 원에서 2021 년 말 46 조 5,000 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사 후 이체된 퇴직급여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IRP 계좌 적립금의 금융기관별 점유율은 은행 66.8%, 증권 26.2% 그리고 보험사 7.0%이다.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은 증권사에 개설된 IRP 계좌가 53.6%로 가장 높고 은행권이 29.0% 그리고 보험권이 13.5% 수준이다.	2023 년 9 월말 기준 IRP 계좌의 적립금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3 년 9 월말 70 조원으로 2020 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사 후 이체된 퇴직급여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IRP 계좌 적립금의 금융기관별 점유율은 은행 66.6%, 증권 28.9% 그리고 보험사 5.5%로서 가입자들이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계속 계좌를 이전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전체 27.2%)은 증권사에 개설된 IRP 계좌가 44.1%로 가장 높고 은행권이 21.0% 그리고 보험권이 11.0%로 증권사	업데이트

				IRP 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의 펀드나 ETF 투자 비중이 타 업권보다 높다.	
1	212	표3-9		첨부 개 2 로 대체	업데이트
1	212	하1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된다. 예외적으로 55 세 이상이거나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소득이 300 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하여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된다.	문장 수정
1	217	상4	연 1,200 만 원	연 1,500 만 원	업데이트
1	217	상9	연간 인출액 1,200 만 원	연간 인출액 1,500 만 원	업데이트
1	217	상14	연금저축계좌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이전할 때에는 계좌에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하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2024 년 11 월부터 현물 이전 가능할 전망).	문장 추가
1	219	하10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2024 년 11 월부터 현물이전 허용 예정).	문장 수정
1	220	상8	연금계좌에서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문장 수정
1	220	하6	시가평가액이다.	적립금평가액이다.	문장 수정
1	221	하2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받지 않는 개인부담금(ISA 전환금액 포함),	문장 수정
1	222	상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문장 수정
1	223	상2	1,200 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된다. 1,200 만 원을	1,500 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1,500 만 원을	업데이트
1	223	상4	1,200 만 원	1,500 만 원	업데이트
1	223	하9	세율	누진공제액	문장 수정
1	224	사례 상2	2023 년에 61 세인 이사례씨는 2018 년	2024 년에 61 세인 이사례씨는 2019 년	업데이트
1	224	사례 상3	2023 년 3 월	2024 년 3 월	업데이트
1	224	사례 상7	2023 년 연금수령	2024 년 연금수령	업데이트

1	224	사례 상8	2018 년 3 월 4 일 이후 개설되었고 2023 년	2019 년 3 월 4 일 이후 개설되었고 2024 년	업데이트
1	224	사례 하8	이사례씨가 2023 년에	이사례씨가 2023 년에	업데이트
1	225	사례 상16	2024 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 년 5 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데이트
1	225	하10		Q3 와 A3 전체 삭제	삭제
1	226	하11	5.5%	3.3~5.5%	문장 수정
1	227	하1	표 3-15 하단	새 문단으로 추가 퇴직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IRP 계좌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IRP 계좌를 해지하여 전액 인출한다. 하지만 해외 이주는 소득세법 상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이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가 개설된 금융가 있다면 소득세법 상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단 추가
1	228	상1	가입자 본인의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의 의료비	문장 수정
1	228	하1		첨부 개 3 추가	내용 추가
1	230	표3-16		회차 10 / 시기 2024 년 남성수명 86.9 세/여성수명 90.7 세	업데이트
1	238	상11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문장 수정
1	248	하2	9 억 원 이하	12 억 원 이하	업데이트
1	249	상6	9 억 원 이하	12 억 원 이하	업데이트
1	251	표 3-20	9 억 원 이하	12 억 원 이하	업데이트
1	259	하 10	⑤ 주택연금 신청 비용 전체	⑤ 주택연금 신청 비용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대출기관 인지세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다. 신탁형방식의 경우 신탁등기비용은 최초 신탁 등기 또는 우선수익권	내용 추가

				한도액 변경 시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법원 등에 납부하는 비용과 법무사(법무대리인) 수수료가 있다. 신탁방식의 등기비용은 7 만 5,000 원 수준으로서 저당권 방식보다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본인이 감정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의 인터넷 시 세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등록면허세는 주택연금 신청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75%가 감면(주택가격 및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2025 년부터 등록면허세 감면은 중단된다.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저당권 설정금액은 최초보증기한(부부 중 연소자 기준 100 세의 말일)의 예상주택가격(주택금융공사의 내부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하여 추정)과 보증금액의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	--	--	---	--

첨부 개1

<표 3-8> 연금저축계좌 적립금 현황

(단위: 조 원)

구 분	2020	2021	2022		
				전년비 증가율(%)	비중(%)
보 험	109.7	112.0	113.6	1.4	70.6
신 택	17.5	17.6	17.0	-3.4	10.6
펀 드	18.9	24.3	22.9	-5.8	14.2
기 타*	6.4	6.8	7.3	7.4	4.5
합 계	152.5	160.7	160.8	0.1	100

출처: 금융감독원

첨부 개2

<표 3-9> IRP계좌의 적립금 및 실적배당상품 현황

(단위: 조 원)

업권	적립금		실적배당상품	
	금액(조 원)	점유율(%)	금액(조 원)	비중(%)
은행	46.0	65.6	9.7	21.0
증권	20.2	28.9	8.9	44.1
보험	3.8	5.5	0.4	11.0
합계	70.0	100.0	19.0	27.2

출처: 금융감독원

첨부 개3

[개인연금 꿀팁 10]

1.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연금계좌와 개인부담금을 입금하는 연금계좌는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

2.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여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3. IRP계좌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연금수령 전)

4. 은퇴 후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된다.

5.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IRP계좌(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IRP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6. 퇴직급여가 이체된 연금계좌에서는 가급적 빨리 연금수령을 신청하여 1만 원이라도 인출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40% 절감).
7. 60세 이후에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여 차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하여(1억 원 한도) 예금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8. 2024년 11월부터 타 금융기관으로 IRP계좌를 이전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물로 이전할 수 있다.
9.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연금계좌로 지정하면 본인의 의료비를 연금수령한도와 별도로 인출하더라도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0.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2012. 3. 1. 전에 개설된 계좌는 6년차)로 하여 과세기간(1.1~12.31.)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가산한다.

제3절 역모기지연금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246	상2	2022 년 5 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9 만 7,658 명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 세이고 가입자 1 인당 매월 112 만	2023 년 7 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1 만 5,687 명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 세이고 가입자 1 인당 매월 118 만	업데이트
1	246	그림3-4		삭제	그림 삭제
1	246	하8	주택연금 수령 방식별로 가입자를 분류하면,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지급 방식이 전체 가입자의 64%이고 종신지급방식과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종신훈합 방식이 23%를	2023 년 11 월 기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지급 방식이 전체 가입자의 64%이고 종신지급방식과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종신훈합 방식이 23%를	업데이트
1	248	하3	공시가격 기준 9 억 원 이하 소유 1 주택자	공시가격 기준 12 억 원 이하 소유 1 주택자(공시가격 합이 12 억 원 이하 다주택자 포함)	문장 수정
1	249	상4	1 억 5,000 만 원	2 억 원	오류 수정
1	249	상6	9 억 원 이하이면 가능 하고 9 억 원을	12 억 원 이하이면 가능 하고 12 억 원을	문장 수정
1	250	상2, 상4	9 억 원 이하	12 억 원 이하	업데이트
1	251	상1	1 억 5,000 만 원	2 억 원	오류 수정
1	251	표 3-20	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 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12 억원 이하 다주택자	업데이트
1	255	하5	금액(5 억 원 한도)	금액(6 억 원 한도, 2023. 10. 11. 이전 가입자는 5 억 원)	문장 수정
1	258	표 3-25	<표 3-25>	<표 3-25>로 첨부	업데이트
1	259	하9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대출기관 인지세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대출기관 인지세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다. 신탁형 방식의 경우 신탁등기비용은 최초 신탁 등기 또는 우선수익권 한도액 변경 시 발생하는 등록세 및	문장 수정

				지방교육세, 법원 등에 납부하는 비용과 법무사(법무대리인) 수수료가 있다. 신탁방식의 등기비용은 7 만 5,000 원 수준으로서 저당권 방식보다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1	267	하1		첨부 역1 추가	꿀팁 추가

〈표 3-25〉 종신지급 주택연금의 월지급금(2024년 3월 기준)

(단위: 천 원)

연령*	주택가격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11억 원	12억 원
50세	106	212	319	425	532	638	744	851	957	1,064	1,170	1,276
55세	145	291	436	582	728	873	1,019	1,164	1,310	1,456	1,601	1,747
60세	198	396	594	791	989	1,187	1,385	1,583	1,781	1,979	2,177	2,375
65세	240	480	720	960	1,201	1,441	1,681	1,921	2,162	2,402	2,642	2,882
70세	295	591	886	1,182	1,478	1,773	2,069	2,365	2,660	2,956	3,251	3,278
75세	370	740	1,111	1,481	1,851	2,222	2,592	2,962	3,333	3,538	3,538	3,538
80세	474	949	1,424	1,898	2,373	2,848	3,322	3,797	3,939	3,939	3,939	3,939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첨부 역1

[역모기지연금 꿀팁 10]

1.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시가 17억 원 정도) 이하인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도 다른 한 채를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주택연금 보증료와 대출이자 는 주택연금 잔액에 가산되어 월복리(연보증료+주택연금 대출이자)로 계산되어 주택연금 청산 시 상환된다.
3. 주택연금 원리금 총액이 주택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는 부족액을 상환하지 않는다.
4. 저당권방식이 아닌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연금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와 상속 분쟁 없이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5. 주택연금 수령액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한다.
6.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가치로 6억 원이다.
7.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필요시 목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주택연금 해지 후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금융공사가 추정한 상승률 이내인 경우 재가입할 수 있다.
9. 재건축 예정 주택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보증기한의 예상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이 1순위로 설정되므로 이주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10.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시가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